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2.

발 의 자 : 정일영 · 박해철 · 진성준
김 윤 · 이훈기 · 이광희
조인철 · 김태년 · 박균택
박용갑 · 최기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·변경 또는 폐지(이하 “지정등”이라 함)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,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.

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,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.

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

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제2항).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2항 중 “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2. 인구감소,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의2(도로 노선 지정·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<u>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21조의2(도로 노선 지정·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인구감소,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